

제 4 장 비 상 주 차 장

4.1 일반사항

4.1.1 목적

- (1) 비상주차장은 우측 길어깨가 좁은 고속도로 구간에서 긴급정차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게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4.1.2 기능

- (1) 고장난 차량을 본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본선의 교통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다.
- (2)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.

4.2 설계기준

4.2.1 대상구간

- (1) 고속도로에서 우측 길어깨의 폭이 2.5m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주차장을 설치한다.
- (2) 장대교, 터널 등에서 길어깨 폭이 2.0m 미만인면서 구조물의 연장이 1,000m 미만 일 때에는 그 구조물 전후의 토공구간에 설치해도 좋으나, 연장이 그 이상 일 때는 구조물 중간에 최소 750m 간격으로 비상주차장을 설치한다.

4.2.2 세부설치기법

(1) 설치위치

- ①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항상 1개소 이상의 비상주차장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이고 원칙적으로 좌우대칭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.
- ② 비상주차장의 설치위치는 비상전화가 설치될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한 위치관계를 감안 하여 설치한다.
- ③ 편절·편성 구간이나 구조물 설치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.
- ④ 지방지역에서 선형개량 등으로 폐도가 발생할 경우 폐도를 활용한다.
- ⑤ 비상주차장 표지판은 양방향 4차로에서는 비상주차장 감속차로 시점에서 200m 전방에, 양 방향 2차로 구간에서는 100m 전방에 설치한다.

(2) 설치규격

① 접속길이 및 유효길이

가. 접속길이는 본선에서 비상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본선과 평행이 될 때까지 필요한 거리로 20~30m를 표준으로 한다.

나. 유효길이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길이만큼 확보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 3대,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1대가 주차 가능한 20m를 최소 길이로 한다.

9-4-2 | 제9편 부대시설공

다. 설치장소 및 위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30m로 설치한다.

라. 교량구간에서는 가급적 공간장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간 내에서 설치한다.

② 폭원

가. 비상주차장의 폭원은 긴급차량이 주차하였을 때 본선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폭원으로 3.0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 측대를 포함한 폭원으로 한다.

나. 통행차량의 빈도, 주변 공간 확보의 용이성 등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